

##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일 시 : 2012년 3월 27일(화) 오전 10시

2. 장 소 :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472 동성홀딩스 본사 대회의실

### 3. 회의목적사항

#### 1) 보고사항

- 가. 감사의 감사보고
- 나. 이사의 영업보고

#### 2) 의결사항

- 제1호 의안 :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-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사내이사 1명, 사외이사 1명)
- 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-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- 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- 제7호 의안 :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

### 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및 지점,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증권회사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.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

### 6. 주총 참석시 준비물

- \*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\*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
주식회사 동성홀딩스  
대표이사 박 원 세 (직인생략)



## [ 안 건 참 고 자 료 ]

### 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신구조문대조표)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2조(목적) 1.~9 생략 (신설)  <u>10. 위 각호에 관련된 투자 및 부대사업</u>	제2조(목적) 1.~9 (좌동) 10. 화학관련 원부자재 구매대행 및 증개업 11. 화학관련 원부자재 도,소매업  <u>12. (좌동)</u>	-사업목적추가
제10조(신주인수권) ①~②생략 (신설)  <u>③~④ 생략</u>	제9조(신주인수권) ①~② (좌동)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, 제2호, 제2호의 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이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<u>④~⑤ (좌동)</u>	-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통지의무 -상법 제418조 개정반영
(신설)	제14조(사채의 발행)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	-사채발행에 관한일 반규정신설 -상법 제469조 제4항 개정반영
<u>제14조(전환사채의 발행)</u>	<u>제14조의2(전환사채의 발행)</u>	-조문번호변경
제33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하며, 필요에 따라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<u>전무이사 및 상무이사</u>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	제33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하며, 필요에 따라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<u>전무 및 상무</u>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	-기업실무를 반영하여 임원직위의 명칭을 변경함.
제34조(이사의 직무) ① 생략 ② <u>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	제34조(이사의 직무) ① (좌동) ② <u>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	-기업실무를 반영하여 임원직위의 명칭을 변경함.
<u>제34조의2(집행임원)</u>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들 수 있다. ②집행임원은 대표이사(사장)를 보좌하고	<u>제34조의2(삭제)</u>	-개정상법에 의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으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삭제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</p> <p>③집행임원의 수, 임기, 직책,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	함.
(신설)	<p>제35조2(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)</p> <p>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</p> <p>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(겸업금지), 제 397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</p>	-개정상법 제400조 제2항 반영
<p>제36조(이사회 결의방법)</p> <p>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(단서 신설)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제36조(이사회 결의방법)</p> <p>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<u>다만 상법 제 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</u>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(좌 동)</p>	<p>-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를 반영하여 단서를 신설함</p> <p>-상법 제 391조 개정 반영(문구조정)</p>
<p>제40조의4(감사의 직무)</p> <p>①~② 생략</p> <p>(신 설)</p>	<p>제40조의4(감사의 직무)</p> <p>①~② (좌 동)</p> <p>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</p>	-개정상법 제412조의4에서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을 명시함에 따라 동 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(신 설)  <u>③~④ 생략</u>	수 있다.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 <u>⑤~⑥ (좌 동)</u>	용을 반영하여 제3항 및 제4항 신설함
(신 설)	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	-개정상법 제412조 제3항 반영
<p>제42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</p> <p>( 신 설 )</p> <p>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<u>대표이사(사장)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</p>	<p>제42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</p> <p>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</p> <p>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<u>대표이사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.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</p> <p>⑤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	<p>-개정상법(제447조)에서 재무제표를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연결재무제표를 일부 회사에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</p> <p>-개정상법(제449조의2)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한 근거규정 반영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
<p>제44조의2(주식의 소각)</p> <p>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</p> <p>②~④ 생략</p>	<p>제44조2(삭제)</p>	<p>-개정상법 제341조 제343조 반영</p>
<p>제45조(이익배당)</p> <p>① 이익의 배당은 <u>금전과 주식으로</u> 할수 있다</p> <p>②~③ 생략</p>	<p>제45조 이익배당</p> <p>① 이익의 배당은 <u>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</u> 할수 있다</p> <p>②~③ (좌동)</p>	<p>-개정상법 제462조의4 반영</p>
<p>제45조의2(분기배당)</p> <p>①~② 생략</p> <p>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일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본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전 결산기의 <u>자본의 액</u></li> <li>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</li> </ol> <p>(신설)</p> <p>③~⑥ 생략</p> <p>④~⑤ 생략</p>	<p>제45조의2(분기배당)</p> <p>①~② (좌동)</p> <p>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전결산기의 <u>자본금의 액</u></li> <li>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</li> <li>3. <u>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</u></li> </ol> <p>④~⑤ (좌동)</p>	<p>-개정상법(제462조 제1항 제4호)반영</p>
<p>부칙</p>	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</p> <p>이 정관의 개정안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</p> <p>다만, 제10조, 제14조, 제34조의2, 제35조의2, 제36조, 제40조의4, 제42조, 제44조의2, 제45조, 제45조의2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</p>	<p>-개정상법시행령 (2012년 4월15일)</p>

**제3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**

▷ 후보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추천인 · 최대주주와의 관계 · 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박충열	1959년 03월 26일	-	해당없음	이사회
서석호	1960년 09월 08일	사외이사	해당없음	이사회

▷ 후보자의 주된직업 · 약력 ·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현직	약력	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
박충열	現) 동성홀딩스 부사장 現) 동성애코어 대표이사 現) 제네웰 대표이사	前) MDS 대표이사	해당없음
서석호	現) 김&장법률사무소 변호사	現) 김&장법률사무소 변호사 現) SKC 사외이사 現)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前) 법무법인바른 변호사 前) 서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) 삼일회계법인 상임법률고문	해당없음

**제4호 의안: 감사 선임의 건**

▷ 후보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추천인 · 최대주주와의 관계 · 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박영재	1958-09-12	해당없음	이사회

▷ 후보자의 주된직업 · 약력 ·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현직	약력	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
박영재	現) 동성홀딩스 상근감사	前) 동성화학 경영관리본부 임원 前) 부경회계법인 고문	해당없음

**제7호 의안: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**

개정 前	개정 後	비고
[제 2 조: 용어] 이 규정에서 "임원"이라 함은 등기 또는 비등기를 불문하고 상근하는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한다. ..... (後略) .....	[제 2 조: 용어] 이 규정에서 "임원"이라 함은 등기 또는 비등기를 불문하고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, 감사, 기타 집행임원 및 회사 이사회의 결의로써 사업운용 목적상 임원으로 분류(직위 명칭 불문)하는 자를 의미한다. ..... (後略) .....	- 임원의 범위 조정